

고 시 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497호

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 「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18호, 2024.3.1.)」을 다음과 같이 조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9월 13일
국토교통부장관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층수별,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 : 천원/㎡)

구 분 (주거전용면적기준)	지상층건축비 (주택공급면적기준)	
5층 이하	40㎡ 이하	2,126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246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169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074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122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105
	125㎡ 초과	2,074

6~10층 이하	40m ² 이하	2,276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404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322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220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271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253
	125m ² 초과	2,220
11~15층 이하	40m ² 이하	2,135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256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179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083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131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114
	125m ² 초과	2,083
16~25층 이하	40m ² 이하	2,159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281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203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106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154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138
	125m ² 초과	2,106
26~30층 이하	40m ² 이하	2,194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318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238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140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189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172
	125m ² 초과	2,140
31~35층 이하	40m ² 이하	2,227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353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273
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173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223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206
	125m ² 초과	2,173
36~40층 이하	40m ² 이하	2,262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390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309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207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258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240
	125m ² 초과	2,207
41~45층 이하	40m ² 이하	2,293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423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340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237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288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271
	125m ² 초과	2,237
46~49층 이하	40m ² 이하	2,364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497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412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306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359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341
	125m ² 초과	2,306

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: 천원/m²)

지하층건축비
(지하층면적기준)

1,009

※주거전용면적과 무관

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

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: 1.2826

※ '20.3.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(=1)를 기준으로 산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(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)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